

참고

위촉 결격 및 제한

□ 위촉 결격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0조2(위원의 결격사유)에 의해 결격 사유 해당시 위촉 제외

제10조의2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- 위촉 결격 사유 조회·확인

-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서식2)」 제출
- 사무처에서 자문위원 위촉 전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실시 (경찰청 협조)
- 결격 사유 확인 시 위촉 제외

※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(crimis.police.go.kr)에서 본인 범죄경력 조회 가능

□ 위촉 제한(신청 시 주의사항)

- 지방의회 의원 본인의 자문위원 참여·활동 의지가 확실한 경우만 신청

※ 「법」 제5조의2(위원의 직무수행)에 의해 성실한 직무수행 요구

제5조의2(위원의 직무수행)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
2.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, 상임위원회, 운영위원회,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이상 출석할 것

-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의 「자문위원 활동 동의」 숙지 및 서명·제출

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통일정책 자문·건의 및 지역회의·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 참여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,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6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※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6조제2항(위촉 해제)

1. 직무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 - 위촉 이후 6개월 동안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
 - 임기 중 법정회의(정기회의, 지역회의, 출범회의 등) 출석률이 1/3 미만인 경우
2.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 -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등
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